

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

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아래와 같이 말소하고, 단체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처분의 제목 :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

2. 처분의 상대방

성명(명칭)	대표자	주사무소 소재지
작은사랑시민교통봉사회	이**	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0동 산74-8

3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: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위반

-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
 -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단체활동 중단

4. 법적근거

-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(등록의 말소)

5. 기타사항

-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-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
 -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
6. 담당자 :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성유경(☎044-201-3866)